

# 귀속이 불분명한 사외유출 소득은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자에게 소득처분함

상담실 백종훈 차장

세법상 소득처분은 사외유출과 사내유보로 처분하게 되는데, 사내유보된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 이후의 소득금액계산에 영향을 미치며, 사외유출된 금액은 해당 귀속자의 과세 소득으로 납세의무를 지우게 된다.

이러한 소득처분에 있어 익금에 산입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은 분명하나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라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의 상여로 처분하고 있다.

대표자의 상여로 인정되면 그 소득금액이 실제 대표자에게 귀속되었는지의 여부와 상관없이 대표자는 그 상여처분된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 납세의무를 진다.

대표자에게 소득세 납세의무가 일단 발생하면 향후 대표자가 그 소득을 법인에 환원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바, 경감되거나 배제되지는 않는다(대법 85다사 1548, 88.11. 8).

물론 사외유출된 소득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만 이를 대표자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 것이므로 그 소득의 귀속이 밝혀진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기타소득이나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여야 한다.

이렇게 불분명한 소득을 대표자에게 무조건 상여처분을 하는 이유는 법인의 모든 상황에 대해 최종 책임과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를 알고 있다고 보며, 또한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 사외유출소득이 해당 법인의 대표자에게 귀속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귀속자를 밝히지 못하는 책임을 대표자에게 물음으로써 그 귀속자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

이때 대표자는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를 말하는데, 세법에서는 경우에 따라 대표자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 대표자가 아니란 객관적 증빙없는 한 등기부상 대표자를 말함

일반적으로 법인의 대표자는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자를 말한다. 즉, 해당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법기통 67-106…19).

그러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즉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면 대표자가 되는 것이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제1항제1호).

따라서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었다하더라도 해당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다면 귀속불명 소득을 그 등기대표자에게 귀속시킬 수는 없다(대법 88누 3802, 89. 4. 11).

## 사업연도 중 대표자 변경시는 각각 구분 귀속된다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을 한다. 사실상의 대표자란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할 뿐만 아니라 업무집행에 있어서 이사회의 일원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집행 및 대표권을 가지며 회사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법기통 67-106…17).

사업연도 중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대표자 각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금액은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구분하여 처분하고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의 일수에 따라 구분 계산하여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상여로 처분한다(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4조).

귀속이 불분명한 소득 등은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직무집행이 정지된 명목상의 대표자에게 처분할 수 없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직무를 행사한 자를 대표자로 한다.

###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4조【대표자 상여처분방법】

영 제106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연도 중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대표자 각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금액은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구분하여 처분하고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의 일수에 따라 구분 계산하여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상여로 처분한다.